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,136,641,957	161,396,371
일 반 회 계	4,447,671,337	132,673,879
특 별 회 계	688,970,620	28,722,492
기 타 특 별 회 계	424,083,066	12,722,492
농 어 촌 주 택 사 업	10,178,689	305,361
의 료 급 여 기 금	383,871,377	11,516,141
동 부 권 특 별 회 계	30,033,000	900,990
공 기 업 특 별 회 계	264,887,554	16,000,000
지 역 개 발 기 금	264,887,554	16,00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,287,64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